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지 방 공 무 원 징 계 및 소 청 규 정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징계 등 사건과 관련한 인사위원회 심의의 효율적 진행 및 징계 등 사건의 처리기한 단축을 위하여 징계 등 사건에 대한 우선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징계 등 사건에 대한 우선심사제도의 도입(안 제5조의3 신설, 별지 제2호의3서식 신설,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별지 제5호서식 개정)

1) 징계 등 혐의자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거나,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신속한 징계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에 따라 우선심사하도록 함

2) 징계혐의자의 퇴직 일정을 관리하기 위하여 확인서(별지 제1호의2서식) 및 징계처리대장(별지 제5호서식)에 ‘퇴직 사유별 예정일’ 항목을 추가 함.

나. 징계의결 요구 시 작성하는 확인서의 포상감경 제한 비위유형에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추가 함.(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다. 인사위원회가 징계부가금을 감면·조정하는 경우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함.(별지 제3호서식 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없 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9. 14. ~ 10. 25.)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개정령안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우선심사)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등 사건의 경우에는 다른 징계등 사건에 우선하여 심사할 수 있다.

1. 징계등 혐의자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우선심사를 신청한 경우

2.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신속한 징계절차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한 경우. 다만,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징계등 혐의자의 정년(계급정년, 근속정년 포함), 근무기간 만료 등으로 퇴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퇴직 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우선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우선심사 신청서를 관할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우선심사 신청서를 접수한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징계등 사건을 다른 징계등 사건에 우선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선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2조에 따라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

확 인 서

1. 인적사항	소속 (현재) (협의 당시)	직위(직급) (현재) (협의 당시)	성명			
2. 비위 유형	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비위		[]해당함 []해당 없음			
	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위		[]해당함 []해당 없음			
	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해당함 []해당 없음			
	음주운전(음주측정 불응 포함)		[]해당함 []해당 없음			
	성폭력범죄		[]해당함 []해당 없음			
	성매매		[]해당함 []해당 없음			
	성희롱		[]해당함 []해당 없음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해당함 []해당 없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비위		[]해당함 []해당 없음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소극행정 제외)		[]해당함 []해당 없음			
	소극행정		[]해당함 []해당 없음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해당함 []해당 없음			
	성 관련 비위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에 대응하지 않거나 은폐한 행위		[]해당함 []해당 없음			
	공무원 채용과 관련한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나 채용 업무와 관련한 비위 행위		[]해당함 []해당 없음			
	부정청탁이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해당함 []해당 없음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해당함 []해당 없음			
3. 징계부가금	대상 여부 []해당함 []해당 없음, 대상금액(원, 배) 형사처벌 및 변상책임 이행상황 등					
4. 감경대상 공적 유무 및 감경 대상 비위 해당 여부	공적 사항		징계 사항[불문(경고) 포함]			
	포상일	포상 종류	시행청	날짜	종류	발령청
	성실한 업무처리 또는 능동적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한 비위 해당 여부			[]해당함 []해당 없음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			[]해당함 []해당 없음			
5. 혐의자의 평소 행실	주의·경고 횟수, 직무수행 태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6. 그 밖의 사정	규제개혁이나 국정과제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비위 해당 여부 ※ 불합리한 법령정비 또는 규제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나 규제민원의 신속한 처리 등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비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만, 고의·중과실이거나 금품비위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외		[]해당함 []해당 없음			
	퇴직 예정일 정년: . . ., 계급정년: . . ., 근무기간 만료: . . ., 기타(): . . .					
	그 밖의 정상 참작 사유 기재					

위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책임자 (소속 및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요구권자

직인

우선심사 신청서

1. 혐의자 인적사항	성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재직기간
	주소		
2. 우선 심사청구 사유			

[] 징계등 혐의자 : 본인은 공무원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서의 모든 징계 사유를 인정하므로, 귀 위원회에서 출석하여 진술하는 대신 서면진술로 갈음하고자 하며,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우선심사를 신청합니다.

[] 징계의결등 요구권자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우선심사를 신청합니다.

위 [] 란에는 √ 표시를 하십시오

년 월 일

(징계등 혐의자) 또는 (징계의결등 요구권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사위원회 귀중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

인적사항	소속	직위(직급)	성명
의결주문	징계 종류, 징계부가금 대상금액 및 부과 배수 등을 기재		
이유	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 관계 법령 및 징계등 면제 사유 해당 여부 등을 기재		
비고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감면사유 등 특이사항 기재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인사위원회

청인

징 계 또는 징 계 부 가 금 처 리 대 장

번호	인 적 사 항 및 결 과								처 리 경 위						징계 의결 번호	비고
	소속 (신청기관)	직 급	성 명	현 소 속 직 위	퇴 직 예 정 일	혐의 내용	요구자 의견	결 과 (의결)	요구서 접수일	사실조사 기간	위 원 회 개 최	의 결 일	의결서 통보일	특기 사항		
				혐의 당시 소속 직위						조 사 자						
					정 년 : 계 급 정 년 : 근 무 기 간 만료 : 기 타 () :											

297mm×420mm
(보존용지 70g/m²)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5조의3(우선심사) ① 위원회는</u>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u> <u>하는 징계등 사건의 경우에는</u> <u>다른 징계등 사건에 우선하여</u> <u>심사할 수 있다.</u> <u>1. 징계등 혐의자가 혐의사실을</u> <u>모두 인정하고 우선심사를 신</u> <u>청한 경우</u> <u>2.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신속</u> <u>한 징계절차 진행이 필요하다</u> <u>고 판단하여 우선심사를 신청</u> <u>한 경우. 다만, 징계의결등 요</u> <u>구권자는 징계등 혐의자의 정</u> <u>년(계급정년, 근속정년 포함),</u> <u>근무기간 만료 등으로 퇴직이</u> <u>예상되는 경우에는 퇴직 예정</u> <u>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우선</u> <u>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u> <u>②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u> <u>별지 제2호의3서식의 우선심사</u> <u>신청서를 관할 위원회에 제출하</u> <u>여야 한다.</u> <u>③ 제2항에 따른 우선심사 신청</u> <u>서를 접수한 위원회는 특별한</u>

<u>사유가 없으면 해당 징계등 사건을 다른 징계등 사건에 우선하여 심사하여야 한다.</u>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연 락 처	(044) 205 - 3358